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신장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269 발의연월일: 2025. 3. 21.

발 의 자:신장식·정춘생·김선민

김남근 · 김한규 · 황운하

강경숙 · 차규근 · 김준형

김재원 • 박은정 • 백선희

이해민 · 서왕진 · 김주영

한창민 · 민병덕 · 정태호

유건영 · 강준현 의원

(20일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방직영기업 및 지방공사로 하여금 결산서, 재무제표, 연 도별 경영목표 및 경영실적 평가 결과 등을 지역주민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,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위 공시사항 중 주요 사항을 통합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OECD에서 발표한 통계(2022년 기준)에 따르면,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31.2%로 OECD 평균인 11.4%을 크게 상회하며 회원 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임. 또한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(2023년 기준) 통계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65.3%에 불과함. 이렇듯 성별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현행 공시 항

목만으로는 성별임금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한계가 있음.

이에 지방직영기업,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임직원의 성별 및 성별임금 현황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성별임금격차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촉진하고 성별임금격차를 해소·완화에 기여하고자 함(안 제46조제2항 등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9270호), 「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9271호),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9272호) 및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9273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6조제2항 중 "결산서, 재무제표, 연도별 경영목표, 경영실적 평가결과,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"을 "다음 각 호의 사항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결산서, 재무제표, 연도별 경영목표 및 경영실적 평가 결과
- 2. 임원 및 직원(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,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9호의 단시간근로자,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 기간제근로자, 「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의 파견근로자 등 다른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해당 지방직영기업의 업무를 하는 근로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의 성별 및 성별 임금 현황(직원의경우 직종·직급·직무·근속연수·고용형태별 현황을 포함한다)
- 3. 제1호 및 제2호 외에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
- 이 경우 통합공시에는 제2항제2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제76조제2항 전단 중 "제49조부터 제52조까지"를 "제46조,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"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""공사"는 "공단"으로, "사장"은

"이사장""을 ""지방직영기업" 또는 "공사"는 "공단"으로, "관리자" 또는 "사장"은 "이사장"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46조(업무 상황의 공표 등) ① 제46조(업무 상황의 공표 등) ① (생 략) (현행과 같음) ② ----다음 각 호의 사항 ② 관리자는 결산서, 재무제표, 연도별 경영목표, 경영실적 평 가 결과,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. <신 설> 1. 결산서, 재무제표, 연도별 경 영목표 및 경영실적 평가 결 과 2. 임원 및 직원(근로계약기간 <신 설> 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, 「근 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 의 단시간근로자,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 기 간제근로자, 「파견근로자 보 호 등에 관한 법률 | 제2조제 5호의 파견근로자 등 다른 사 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해 당 지방직영기업의 업무를 하 는 근로자를 포함한다. 이하

<신 설>

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각 지방직영기업이 공시 하는 사항 중 주요 사항을 표 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 (이하 이 조에서 "통합공시"라 한다)할 수 있다. <후단 신설>
- ④ ~ ⑥ (생 략) 제76조(설립·운영) ① (생 략)
 - ② 공단의 설립·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, 제53조제1항, 제56조제1항 및 제3항, 제57조, 제58조, 제58조의2,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,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8까지, 제64조, 제64조의2, 제64조의4부터 제64조의6까지, 제65조,

이 호에서 같다)의 성별 및
성별 임금 현황(직원의 경우
직종・직급・직무・근속연수
•고용형태별 현황을 포함한
<u>다)</u>
3. 제1호 및 제2호 외에 경영에
관한 중요 사항
③
<u>이 경우 통합공시</u>
에는 제2항제2호의 사항을 포
함하여야 한다.
④ ~ ⑥ (현행과 같음)
제76조(설립·운영) ① (현행과
같음)
②
<u>제46</u> 조, 제49조부터 제52조
까지

제65조의2, 제66조, 제66조의2, 제68조, 제69조, 제71조, 제71조 의2부터 제71조의4까지, 제72조 및 제73조,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공사"는 "공단"으로, "사장"은 "이사장"으로, "사채" 는 "공단채"로 본다.

"지방직영기업" 또는 "공사"
는 "공단"으로, "관리자" 또는
<u> "사장"은 "이사장"</u>